

2025

한성대학교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수시 모집요강



C

O

N

T

E

N

T

S

전형 주요사항

I. 지원자격 02

1. 공통자격 02
2. 세부자격 03
3. 인정기준 05

II. 모집인원 및 선발방법 08

1. 모집인원 08
2. 선발방법 09

III. 전형안내 10

1. 전형일정 10
2. 전형방법 10

IV. 제출서류목록 12

V. 지원자격별 제출서류 상세목록 14

VI. 지원자 유의사항 18

VII. 재외한국학교 현황 20

제출서류 양식 21

본 모집요강의 일부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므로 원서접수 전 한성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enter.hansung.ac.kr/>



✓ 전형 주요사항

1. 모집구분 및 모집인원

모 집 구 분	모 집 인 원		비 고
	주간	야간	
일반 재외국민 (중·고교과정 국외이수자)	19명	10명	신입생 입학정원의 2% 이내 모집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	모집인원 제한 없음		
북한이탈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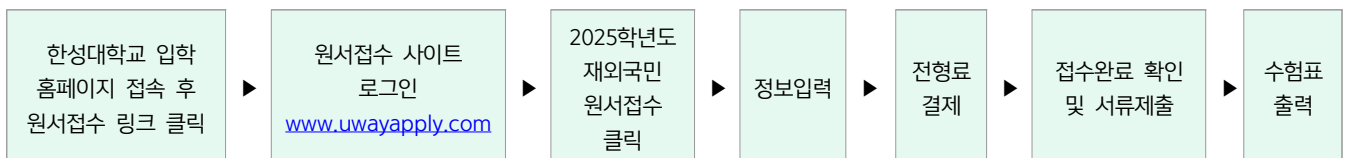
2. 전형절차 및 방법

단 계	세 부 절 차
1단계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2단계	지원 자격심사
3단계	면접고사(100%) ※지원 자격심사 합격자에 한함
4단계	합격자 발표

3. 원서접수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원서접수(인터넷 접수)		2024.07.08.(월) ~ 2024.07.12.(금) 17:00까지	
서류제출(우편 및 방문제출)		2024.07.08.(월) ~ 2024.07.12.(금)	2024.07.12.(금) 우편소인 유효
면접고사		2024.08.14.(수)	
최초 합격자	발표	2024.08.30.(금) 예정	변경될 수 있음
	등록(온라인)	2024.12.16.(월) ~ 2024.12.18.(수) 16:00 예정	
총원합격자 발표		2024.12.19.(목) ~ 2024.12.26.(목) 18:00 예정	
등록금 납부		2025.02.10.(월) 10:00 ~ 2025.02.12.(수) 16:00 예정	

4. 원서접수 절차



- ※ 원서접수 사이트 회원가입은 반드시 지원자 명의로 하고,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입력
- ※ 수험표는 면접당일 지참



1 공통자격

❖ **공통학력요건:**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12년 이상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자

모 집 구 분		상 세 구 분	지 원 자 격
일반 재외국민 (중·고교과정 국외이수자)	영주교포의 자녀	영주권 취득 외국 교포 자녀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 (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국외근무자의 자녀	공무원	
		상사주재원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정부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현지법인 근무자	
		현지 자영업자	
		국외 파송 선교사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		재외국민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 (초·중·고)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및 결혼이주민 ▷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 12년
		외국인	
		귀화 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검정고시출신자 가능

2021학년도 이후 재외국민 및 외국인 공통 지원 자격 안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의 재외국민 및 외국인(정원의 2%선발) 전형의 지원 자격을 표준화함

구 분	2021학년도 이후
국외재학기간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 과정 3년 이상
국외체류기간	학생: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부모: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국외근무자 재직기간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

/ 일반 재외국민의 자녀 (중·고교과정 국외이수자) /

상 세 구 분		지 원 자 격
영주교포의 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영주하는 교포(영주권 발급 받은 자)의 자녀로서, 국외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1개 학년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3년(6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재직증명서 제출 시 지원 가능)
국외 근무자의 자녀	공무원	외국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공무원의 자녀로서 국외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1개 학년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3년(6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상사주재원	외국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상사주재원의 자녀로서 국외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1개 학년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3년(6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 공식파견이 지난 근무기간은 국외근무로 인정하지 않음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외국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로서 국외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1개 학년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3년(6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정부유치 과학자 및 교수요원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해 귀국한 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국외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1개 학년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3년(6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기타 적법한 사유(절차)로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거주 중이거나 거주하고 귀국하는 재외국민의 자녀로서 국외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1개 학년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3년(6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1) 국외근무자의 정의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 유학, 교육, 연수, 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자 제외함

구 분	지 원 자 격 인 정 범 위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상사주재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공공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국외지점(또는 국외사무소)의 임직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국외지점(또는 국외사무소)의 임직원(설치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국외지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정부파견 의사, 언론기관 특파원
외국정부	▷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 (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국제기구	▷ 정부 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 (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2) 국외근무자 자녀의 정의

-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3) 국외체류일수 조건

- (ㄱ)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ㄴ)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ㄷ)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모 집 구 분	내 용				
	학생		국외근무자		배우자
	재학	체류	근무	체류	체류
일반 재외국민	3년	학생 이수기간의 3/4	3년	학생 이수기간의 2/3	학생 이수기간의 2/3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	12년	12년	-	-	-
북한이탈주민	제한 없음		-	-	-

- (ㄹ) 역년(Calendar Year)과 학년(Academic Year)을 기준으로 하며, 반드시 학생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
- 국외거주기간: 재학 및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상에 기재된 시간
 - 국외체류기간: 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 국내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 대한민국 출국일은 국외 체류일수에 산입하며, 입국일은 국외 체류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국외영주기간: 영주권을 발급받은 후 국외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
 - 국외근무기간: 증명서상(재학 및 경력증명서) 국외근무 발령일로부터 귀임발령일까지의 기간
- (ㄴ) 국외 근무기간, 거주(영주)기간, 체류기간 산정 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국외근무확인서, 재학기간 증명서류, 출입국증명서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산정함.
- (ㄷ) 보호자(부모)의 근무기간, 부모의 거주(영주)기간 및 체류기간과 학생의 재학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만 특례 인정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 (ㄹ) 코로나-19로 인해 국외근무자의 근무 중인 직장이 휴업하는 경우, 관련 소명자료 제출 시 본교 별도의 심사를 통해 휴업기간은 근무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음. 단, 소명자료는 공적증명서에 한함.

/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 /

구 분	지 원 자 격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에 의거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초·중·고) 12년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 (ㄱ)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초·중·고)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 이주민을 포함함.
- (ㄴ) 교육과정 중 국내소재 학교에 재학한 사실이 있으면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 (ㄷ)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자이며, 졸업 전 TOPIK 4급 이상 취득을 입학 조건으로 함.

/ 북한이탈주민 /

구 분	지 원 자 격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초·중·고)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하였거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하는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 인정함

3 인정기준

/ 일반 재외국민의 자녀 (중·고교과정 국외이수자) /

(1) 국외학교 인정기준

- (ㄱ) 국외학교는 국외에 소재한 정규학교를 의미하며, 국내 고교에서 이수한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ㄴ) 국외학교 과정은 해당국 교육관계법령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학교 과정만을 인정함.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 비인가 대안학교, 유아원, 유치원, 어학연수목적의 교육기관, 대학예비과정, 평생교육기관, 성인대학, 사이버·통신 교육과정은 인정 불가)
- (ㄷ) 보호자의 외국근무 국가 내에 소재한 학교만을 인정함. 다만, 보호자 근무국의 전쟁, 천재 또는 지변, 전염병 등으로 인해 제3국에서의 수학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인근 국가에서 수학하고 현지 한국대사관 인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본 교에서 별도의 심사를 통해 학생의 제3국 수학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함.
- (ㄹ) 국내외 검정고시(미국 및 캐나다의 GED, 중국의 자학고시 등 포함) 출신자는 국외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자로 불인정함. (단,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 인정)

(2) 국외 재학기간 인정기준

- (ㄱ) 국외학교 재학기간은 국내 고교에서 이수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만 인정함.
- (ㄴ) 재학기간은 영주 및 거주기간 내에서 이수한 학기 또는 학년의 해당 기간임.
- (ㄷ) 부모의 국외 근무기간과 지원자의 재학(고교 1개년 과정포함) 중 중첩되는 기간임.
- (ㄹ) 부모 근무기간과 학생 재학기간의 미중첩기간 중 지원자의 국외학교 재학기간은 재외국민 자격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총 이수 학기로는 인정함.
- (ㄴ) 부모의 국외 근무 중첩 기간이 3년(1,095일)이 안 되는 경우에도 국외 근무기간이 만 3년을 충족하고, 부모의 국외 근무기간 내에 학생이 6개 학기(고교 1개년 과정 포함)를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국외 근무(중첩)기간의 부족분 최대 1달까지 인정함. (단, 체류일수의 부족분은 불인정)
- (ㄷ)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계산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ㄸ)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국외학교재학기간 산정은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계산함.
- (ㄹ) 국외 고교 과정에 재학하다가 국내 중학교 과정으로 편입학하거나 국내 고교 1학년으로 신입학하여 국내 고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정 지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국외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ㅊ)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만, 재학기간으로 인정함.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두 응시, 성취한 경우)

(3) 고등학교 졸업학력 및 국외재학기간

- (ㄱ)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졸업시점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5년 2월까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하여야 함. 단, 해당국의 학제 상 학년도가 우리나라보다 1개월 이내로 늦는 국가(일본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2025년 3월까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할 경우 인정함.
- (ㄴ) 초·중·고교 수학기간은 한국 학제를 기준으로 함.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 (6-3-3제)교육 연한 12년 및 2학기제 기준)
- (ㄷ) 2학기제가 아닌 학교는 다음과 같은 기준 적용

구분	환산
3학기제	▶ 1 Term: 학기 인정 X ▶ 2 Terms: 1개 학기 이수 인정 ▶ 3 Terms: 2개 학기, 즉 해당 학년 이수 인정
4학기제	▶ 1 Quarter: 학기 인정 X ▶ 2, 3 Quarters: 1개 학기 이수 인정 ▶ 4 Quarters: 2개 학기, 즉 해당 학년 이수 인정

- (ㄹ)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 (재외국민 및 외국인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 제7호 공통)
- (ㄴ)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 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 (ㄷ)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ㄹ) 특례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기형적 국내·국외 재학 과정 (중복·월반 등)을 이수한 경우 부적격 처리함.
- (ㄴ) 유급기간은 재학기간에서 제외함.
- (ㄷ) 코로나-19로 인해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가 휴교하였을 경우 관련 자료 제출 시 재학 기간으로 인정함. 단, 소명자료는 공적 증명서(학교장/교육부 발급, 공문 등)에 한함.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정규교육 과정 내 온라인 수업은 소명 자료 제출받아 인정여부를 판단함.
- (ㄹ) 학력인정기준

국외고등학교 졸업자

- 13년 이상 학제인 국외 고교에서 12년 이상을 수료하고 초·중등 교육과정의 총 수학기간이 23개 학기 이상이면 국내 고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것으로 인정함. 다만, 지원 자격을 충족한 지원자는 13학년제 학교의 최종학년을 고3으로 인정하고 학년을 역산하여 계산함.
예) 지원 자격을 충족하고 13년제 학교에서 12학년까지 이수한 경우: 고1 과정은 Year 10
예) 지원 자격을 충족하고 13년제 학교에서 13학년까지 이수한 경우: 고1 과정은 Year 11
- 13년제→12년제, 12년제→13년제 이동한 경우에는 불법, 편법의 소지가 없는 범위에서 1개 학년씩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할 수 있음.
- 12년 학제인 국외 고교를 졸업하고 초·중등 교육과정의 총 수학기간이 최소 23개 학기 이상이면 국내 고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것으로 인정함.
- 12년 미만 학제인 국외 고교를 졸업했을 경우에는 12년 교육과정 중 부족한 기간만큼 해당국의 정규 대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함.

국내 고등학교 및 재외한국학교 졸업자

- 국내 고등학교 또는 재외한국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초·중등 교육과정의 총 수학기간이 최소 23개 학기 이상이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함.
- 비인가 대안학교,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비정규 교육과정 학력은 인정하지 않음.

/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 /

(1) 국외재학 인정 학교

- (ㄱ) 국외학교 과정은 해당국 교육관계법령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학교 과정만을 인정함.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 비인가 대안학교, 유아원, 유치원, 여학연수목적의 교육기관, 대학예비과정, 평생교육기관, 성인대학, 사이버·통신 교육과정은 인정 불가)
- (ㄴ) 국외 검정고시(미국 및 캐나다의 GED, 중국의 자학고시 등 포함) 출신자는 국외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자로 불인정함.

(2) 고등학교 졸업학력 및 학제별 지원자격 인정기준

- (ㄱ)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5년 2월까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해야 함. 단, 해당국의 학제 상 학년도가 우리나라보다 1개월 이내로 늦는 국가(일본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2025년 3월까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할 경우 인정함.
- (ㄴ) 초·중·고교 수학기간은 한국 학제를 기준으로 함.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 (6-3-3제)교육 연한 12년 및 2학기제 기준)
- (ㄷ) 2학기제가 아닌 학교는 다음과 같은 기준 적용

구분	환산
3학기제	▶ 1 Term: 학기 인정 X ▶ 2 Terms: 1개 학기 이수 인정 ▶ 3 Terms: 2개 학기, 즉 해당 학년 이수 인정
4학기제	▶ 1 Quarter: 학기 인정 X ▶ 2, 3 Quarters: 1개 학기 이수 인정 ▶ 4 Quarters: 2개 학기, 즉 해당 학년 이수 인정

- (ㄹ) 부정·편법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 (재외국민 및 외국인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 제7호 공통)
- (ㄴ) 국외 1개 국가 내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국외에서 초등학교를 신입학하여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하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하고 마지막 3년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함. 단, 국외의 1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했어도 학제가 동일하지 않은 2개 학교 이상에서 이수한 경우에는 12년 이상 이수해야 함
- (ㄷ) 학제가 다른 국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 :

학 년 제	인정 여부 / 인정 조건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 1개 국가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
11학년제	초·중·고 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단, 중복수료학기를 제외하고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고 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2학년제	
13학년제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 10-11년제: 학년제로 인한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 (ㄱ)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 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 (ㄴ)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복수 발생 인정.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ㄷ) 중복 학기 등 지원 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 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학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ㄹ) 코로나-19로 인해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가 휴교하였을 경우 관련 자료 제출 시 재학 기간으로 인정함. 단, 소명자료는 공적 증명서(학교장/교육부 발급, 공문 등)에 한함.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정규교육 과정 내 온라인 수업은 소명 자료 제출받아 인정여부를 판단함.
- (ㄷ) 초·중·고등학교 국외 전 교육과정 이수기간 동안의 출입국사실증명서상 국외체류일수를 확인해, 실제 국외재학여부를 판단함.



1

모집인원

주/야	대 학	학과 / 전공트랙	모집인원	
			일반 재외국민 (중·고교과정 국외이수자)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 및 북한이탈주민
주간	크리에이티브 인문예술대학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영미문화콘텐츠/영미언어정보/한국어교육/역사문화규레이션/역사콘텐츠/지식정보문화/ 디지털인문정보학	총 19명 이내	모집인원 제한 없음
		예술학부 동양화전공/서양화전공/한국무용전공/현대무용전공/발레전공		
	미래융합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국제무역/글로벌비즈니스/기업·경제분석/경제금융투자/공공행정/법&정책/ 부동산/스마트도시·교통계획/기업경영/벤처경영/회계·재무경영		
	디자인대학	ICT디자인학부 뉴미디어 광고·커뮤니케이션디자인/영상·애니메이션디자인/UX/UI디자인/ 브랜드·패키지디자인/인테리어디자인/VMD·전시디자인/게임그래픽디자인		
		글로벌패션산업학부 패션마케팅/패션디자인/패션크리에이티브디렉션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		
	IT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모바일소프트웨어/빅데이터/디지털콘텐츠·가상현실/웹공학		
		기계전자공학부 전자/시스템반도체/기계설계/기계자동화		
		산업시스템공학부 산업공학/지능형제조시스템		
	창의융합대학	상상력인재학부		
		문학문화콘텐츠학과		
		AI응용학과		
		융합보안학과 미래모빌리티학과		
야간	크리에이티브 인문예술대학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영미문화콘텐츠/영미언어정보/한국어교육/역사문화규레이션/역사콘텐츠/지식정보문화/ 디지털인문정보학	총 10명 이내	
	미래융합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국제무역/글로벌비즈니스/기업·경제분석/경제금융투자/공공행정/법&정책/ 부동산/스마트도시·교통계획/기업경영/벤처경영/회계·재무경영		
	디자인대학	ICT디자인학부 게임그래픽디자인		
		글로벌패션산업학부 패션마케팅/패션디자인/패션크리에이티브디렉션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		
	IT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모바일소프트웨어/빅데이터/디지털콘텐츠·가상현실/웹공학		
		기계전자공학부 전자/시스템반도체/기계설계/기계자동화		
		산업시스템공학부 산업공학/지능형제조시스템		
	창의융합대학	문학문화콘텐츠학과		
		AI응용학과		

※ 학사구조 개편에 따른 트랙의 신설, 폐지, 변경 등 조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서접수 이전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모집요강 반드시 확인.

- (1)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 [북한이탈주민]은 모집인원에 제한 없이 수학능력을 고려하여 선발함.
- (2) 모집인원에 상관없이 적절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3) 동일 학부 내에서 세부 트랙의 구분 없이 입학하며, 2학기 진학 시 트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단, IT 공과대학은 학부 구분 없이 입학하며, 2학년 진학 시 학부 및 트랙을 선택할 수 있음) ※ 입학 후 트랙(전공) 선택 시 관련 학사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함.
- (4) 입학전형 관련 평가 내용, 성적은 일절 공개하지 않음.
- (5) 지원 자격 미충족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을 취소함.



1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모든 사항은 대한민국 시간 기준)	안 내 사 항
원서접수 (인터넷 접수)		2024.07.08.(월) ~ 2024.07.12.(금) 17:00	본교 입학홈페이지 접속 https://enter.hansung.ac.kr
서류제출 (우편발송)		2024.07.12.(금) 17:00 기한	7월 12일 우편소인 유효
면접고사		2024.08.14.(수)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면접고사 실시 - 면접고사 수험생 안내문은 고사 당일 3~4일 전 본교 입학 홈페이지에 게시함 - 별도의 개별 통보 없음
최초 합격자	발표	2024.08.30.(금) 예정	
	등록(온라인)	2024.12.16.(월) ~ 2024.12.18.(수) 16:00 예정	- 온라인 등록 처리 - 별도의 예치등록금 없음 - 미등록시 합격취소
충원합격자 발표		2024.12.19.(목) ~ 2024.12.26.(목) 18:00 예정	- 본교 입학홈페이지 - 별도의 개별통보 없음
등록금 납부		2025.02.10.(월) 10:00 ~ 02.12.(수) 16:00 예정	본교 입학홈페이지 (가상계좌 입금)

※ 수시 및 정시 일정은 한국대학교육협회의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일정 지침을 기준으로 함.

※ 상기 일정은 학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본교 입학홈페이지 확인.

※ 원서접수, 면접고사, 합격자 발표, 등록금 납부 등의 모든 공지사항은 본교 입학홈페이지 참고.

※ 면접고사는 서류 자격심사 합격자에 한해 실시하며 별도의 개별통보 없이 수험생 안내문은 입학홈페이지에 공지됨.

2 전형방법

(1) 전형절차

단 계	세 부 절 차	비 고
1단계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2단계	지원 자격심사	입학사정에 제출된 전형 자료 검토 시 허위, 부정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또는 지원 자격이 미달 된 경우 불합격 처리함
3단계	면접고사	교육과정의 충실한 이수, 적성, 인성 및 성장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4단계	합격자 발표	

(2) 전형방법

계 열	방 법	제 출 자 료	
모든 학(부)과 (예술학부, ICT디자인학부 제외)	면접 100%	- 면접고사 당일 수험생대기실에서 ‘면접 기초자료서’ 작성 및 제출 - 기타 서류제출 없음	
예술학부 ICT디자인학부		예술학부(동양화·서양화) ICT디자인학부	- 포트폴리오 작품집 5점 이상 제출. 규격 제한은 없으나 당일 지참·제출이 가능한 형태 (원본, 창작품사진, 스캔본 등)로 제출. - USB, CD등의 전자매체 형태의 포트폴리오 제출불가
		예술학부 (한국무용·현대무용·발레)	- 작품동영상 1편 (3분 이내) - 동영상 형태로 USB에 저장 제출
		- 수험생별 포트폴리오 또는 작품동영상은 사전제출이 아닌 면접고사 당일 본인 지참하며, 면접고사실 내에서 직접 제출함. ※ 지원자 성명, 지원학부, 수험번호 등 개인신상정보 노출 시 불합격 처리함. - 면접고사 종료 후 수험생에게 반환 조치함	

(3) 전형료

구 분	모집단위	금액
수시	전체	15만원

※ 접수 완료 후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전형료 환불에 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제34조 4)에 따름

IV

제출서류목록



순번	제출서류	일반 재외국민 (중·고교과정 국외이수자)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			북한 이탈 주민
		영주 교포의 자녀	국외근무자의 자녀				기타 재외국민			재외 국민, 외국인, 결혼 이주			
			공무원	상사 주재원	외국정부/국제기구 근무자	유치 과학자/교수요원	현지 법인 근무자	현지 자영업자	국외 선교사				
1	지원자격심사신청서	●	●	●	●	●	●	●	●	●	●	●	●
2	외국학교 조사표	●	●	●	●	●	●	●	●	●	●	●	●
3	초·중·고 수학기간 종합기록표	●	●	●	●	●	●	●	●	●	●	●	
4	학력조회동의서/학력조회이뢰서	●	●	●	●	●	●	●	●	●	●	●	
5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초·중·고)	●	●	●	●	●	●	●	●	●	●	●	●
6	성적증명서 (초·중·고)	●	●	●	●	●	●	●	●	●	●	●	
7	국외학교 학사일정표 (국외학교 모두)	●	●	●	●	●	●	●	●	●	●	●	
8	가족관계증명서(부/모/학생)	●	●	●	●	●	●	●	●	●	●	●	
9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	●	●	●	●	●	●	●	●	●	●	
10	출입국사실증명발급 신청위임장	●	●	●	●	●	●	●	●	●	●	●	
11	여권사본	●	●	●	●	●	●	●	●	●	●	●	
12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부/모/학생)	●	●	●	●	●	●	●	●				
13	보호자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	●	●	●	●	●		●				
14	현지법인 법인등록증						●						
15	현지법인 법인세납부증명서						●						
16	영주권 사본 (부/모/학생)	●											
17	국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국외지사설치신고(수리)서			●									
18	정부초청서/추천서				●	●							
19	해당국 사업자등록증							●					
20	보호자 세금납입 증명서							●					
21	외국국적증명서 (시민권 또는 여권사본)										●		
22	외국인등록증 사본 (앞·뒷면)										●		
23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24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학력확인서												●
25	한국어능력증명서										●		
26	재정보증서										●		
27	종교단체증명서								●				
28	혼인관계증명서											●	
29	부모 이혼/사망 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30	제 3국 수학인증서	해당자만 제출											

- (1) 자격요건 기간 동안 보호자의 신분이동으로 자격 구분이 상이할 경우,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로 지원하고 지원자격 해당기간의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함.
- (2) 합격/ 등록 후 별도 공지되는 기간에 원본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됨.
- (3) 국외에서 발급받은 모든 서류는 반드시 해당국가에 소재한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 또는 해당국가 정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단, 교육부 인정 재외한국학교는 영사확인 불필요

아포스티유 가입국가 현황 (2024. 1. 11. 기준, 아포스티유 & 영사확인 관련 정보: https://www.0404.go.kr/consulate/consul_apo.jsp)

아시아, 대양주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군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브루나이, 사모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마카오, 홍콩 포함), 쿡제도, 타지키스탄, 통가, 파키스탄, 팔라우, 피지, 필리핀, 한국
유럽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북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르기즈스탄, 키프로스,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북미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캐나다
중남미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라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앤티가 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자메이카
아프리카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에스와티니, 카보베르데, 브룬디, 튀니지
중동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스라엘

- (4)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모든 서류는 공증받은 국문 또는 영문 번역서를 첨부하여야 함.
※ 중국어의 경우 중국정부 공증처에서 작성한 한글(또는 영문) 공증서를 함께 제출.
- (5) 재외국민 지원 대상인 자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이혼 전 부모의 자격요건 관련 모든 서류와 이혼 후 친권자의 자격요건 관련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중국인의 경우 중국공증처에서 공증한 원본 제출
- (6) 재외국민 지원 대상인 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해당 입증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중국인의 경우 중국공증처에서 공증한 원본 제출.
- (7) 코로나 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 자격 미충족 시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내부 서류심사 후 지원 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 (8) 제3국 수학인증서는 보호자 근무 현지 한국 대사관에서 인증서류를 받아 제출해야 함.
- (9) 지원 자격 심사에 필요한 경우, 상기 명시된 서류 외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1) 영주교포의 자녀

순번	목 록	상세내용
1	지원자격심사신청서	본교소정양식 ※ 국외재학 기간 중 특례기간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특례기간(3년) 반드시 작성
2	국외학교 조사표	본교소정양식
3	초·중·고 수학기 간 종합기록표	본교소정양식
4	학력조회동의서 Letter of Consent 학력조회의뢰서 Letter of Request	▶ 재학한 모든 국외학교에 대해 각 1부씩 작성 ▶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는 작성하지 않음 ▶ 학력조회의뢰서(Letter of Request)는 [지원자 작성란]만 작성
5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초·중·고)	▶ 모든 제출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하여 원본 제출 ▶ 국외에서 발급받은 모든 서류는 해당국가에 소재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제출 ▶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모든 서류는 공증 받은 국문 또는 영문 번역서 첨부. 중국어의 경우 중국정부 공증처에서 작성한 공증서 함께 제출 ▶ 고교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자는 합격 후 졸업증명서 추가 제출 ▶ 일부기간 재학으로 졸업증명서 발급 불가시 재학증명서 제출 ▶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에서 발급한 서류에 대해서는 학교장 직인 외에 별도 공증 필요 없음
6	성적증명서 (초·중·고)	▶ 초등학교의 경우 성적증명서는 성적이 기록된 학교생활기록부로 대체 가능 ▶ 성적증명서는 학년별 School Report 대신 Official Transcript를 제출해야함 ▶ 학교 사정 상 재학증명서가 발행되지 않는 경우, 해당학교 담당자의 서명, 날인을 받은 공식 letter도 제출 가능 함. 단, 재학기간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함
7	국외학교 학사일정표	▶ 초중고 (국외학교만 해당) ▶ 학사일정 (학기시작 및 종료일 등이 표기된)을 홈페이지에서 출력하거나 캡처하는 경우, 홈페이지 주소 표기 ▶ 영어가 아닌 외국어의 경우 번역공증
8	가족관계증명서 (부/모/학생)	▶ 지원자 기준 (2024년 6월 발급분부터 인정)
9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부/모/학생)	▶ 2024년 6월 발급분부터 인정 ▶ 국내 입국 사실이 없을 경우 입국하지 않았다는 출입국사무소의 확인서 제출
10	출입국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부/모/학생)	
11	여권사본 (부/모/학생)	▶ 여권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의 사진 페이지
12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부/모/학생)	
13	보호자 재직증명서 (국외체류 경력증명서)	▶ 국외근무지 및 근무기간 명기
14	영주권 사본 (부/모/학생)	

(2) 국외근무자의 자녀

순번	목 록	상세내용
1	지원자격심사신청서	본교소정양식 ※ 국외재학 기간 중 특례기간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특례기간(3년) 반드시 작성
2	국외학교 조사표	본교소정양식
3	초·중·고 수학기 간 종합기록표	본교소정양식

4	학력조회동의서 Letter of Consent 학력조회회의서 Letter of Request	▶ 재학한 모든 국외학교에 대해 각 1부씩 작성 ▶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는 작성하지 않음 ▶ 학력조회회의서(Letter of Request)는 [지원자 작성란]만 작성
5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초·중·고)	▶ 모든 제출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하여 원본 제출 ▶ 국외에서 발급받은 모든 서류는 해당국가에 소재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제출 ▶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모든 서류는 공증 받은 국문 또는 영문 번역서 첨부. 중국어의 경우 중국정부 공증처에서 작성한 공증서 함께 제출 ▶ 고교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자는 합격 후 졸업증명서 추가 제출 ▶ 일부기간 재학으로 졸업증명서 발급 불가시 재학증명서 제출 ▶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에서 발급한 서류에 대해서는 학교장 직인 외에 별도 공증 필요 없음 ▶ 초등학교의 경우 성적증명서는 성적이 기록된 학교생활기록부로 대체 가능 ▶ 성적증명서는 학년별 School Report 대신 Official Transcript를 제출해야함 ▶ 학교 사정 상 재학증명서가 발행되지 않는 경우, 해당학교 담당자의 서명, 날인을 받은 공식 letter도 제출 가능 함. 단, 재학기간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함
6	성적증명서 (초·중·고)	
7	국외학교 학사일정표	▶ 초·중고 (국외학교만 해당) ▶ 학사일정 (학기시작 및 종료일 등이 표기된)을 홈페이지에서 출력하거나 캡처하는 경우, 홈페이지 주소 표기 ▶ 영어가 아닌 외국어의 경우 번역공증
8	가족관계증명서 (부/모/학생)	▶ 지원자 기준 (2024년 6월 발급분부터 인정)
9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부/모/학생)	▶ 2024년 6월 발급분부터 인정 ▶ 국내 입국 사실이 없을 경우 입국하지 않았다는 출입국사무소의 확인서 제출
10	출입국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부/모/학생)	
11	여권사본 (부/모/학생)	▶ 여권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의 사진 페이지
12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부/모/학생)	
13	보호자 재직증명서 (국외체류 경력증명서)	▶ 국외근무지 및 근무기간 명기
14	외국환은행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 국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 투자신고(수리)서 또는 국외지사설치(변경/폐지)(수리)서	▶ 상사주재원만 해당 ▶ 국외 근무 시작일 이전 신고 된 서류만 인정 ▶ 근무자의 국내 소속기간과 파견 또는 근무하는 국외지사가 다를 경우 지원불가
15	정부초청서 또는 추천서	▶ 외국정부/국제기구 근무자,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만 해당

(3)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순번	목 록	상세내용
1	지원자격심사신청서	본교소정양식 ※ 국외재학 기간 중 특례기간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특례기간(3년) 반드시 작성
2	국외학교 조사표	본교소정양식
3	초·중·고 수학기간 종합기록표	본교소정양식
4	학력조회동의서 Letter of Consent 학력조회회의서 Letter of Request	▶ 재학한 모든 국외학교에 대해 각 1부씩 작성 ▶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는 작성하지 않음 ▶ 학력조회회의서(Letter of Request)는 [지원자 작성란]만 작성
5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초·중·고)	▶ 모든 제출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하여 원본 제출 ▶ 국외에서 발급받은 모든 서류는 해당국가에 소재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제출 ▶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모든 서류는 공증 받은 국문 또는 영문 번역서 첨부.

		중국어의 경우 중국정부 공증처에서 작성한 공증서 함께 제출 ▶ 고교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자는 합격 후 졸업증명서 추가 제출 ▶ 일부기간 재학으로 졸업증명서 발급 불가시 재학증명서 제출 ▶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에서 발급한 서류에 대해서는 학교장 직인 외에 별도 공증 필요 없음
6	성적증명서 (초·중·고)	▶ 초등학교의 경우 성적증명서는 성적이 기록된 학교생활기록부로 대체 가능 ▶ 성적증명서는 학년별 School Report 대신 Official Transcript를 제출해야함 ▶ 학교 사정 상 재학증명서가 발행되지 않는 경우, 해당학교 담당자의 서명, 날인을 받은 공식 letter도 제출 가능 함. 단, 재학기간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함
7	국외학교 학사일정표	▶ 초중고 (국외학교만 해당) ▶ 학사일정 (학기시작 및 종료일 등이 표기된)을 홈페이지에서 출력하거나 캡처하는 경우, 홈페이지 주소 표기 ▶ 영어가 아닌 외국어의 경우 번역공증
8	가족관계증명서 (부/모/학생)	▶ 지원자 기준 (2024년 6월 발급분부터 인정)
9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부/모/학생)	▶ 2024년 6월 발급분부터 인정 ▶ 국내 입국 사실이 없을 경우 입국하지 않았다는 출입국사무소의 확인서 제출
10	출입국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부/모/학생)	
11	여권사본 (부/모/학생)	▶ 여권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의 사진 페이지
12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부/모/학생)	
13	보호자 재직증명서 (국외체류 경력증명서)	▶ 국외근무지 및 근무기간 명시 ▶ 현지자영업자는 제출 안함
14	현지법인 법인등록증	▶ 현지법인 근무자만 해당 ▶ 법인 등록일이 국외 근무 시작일 이전이어야 함
15	보호자 현지법인 법인세 납부증명서	▶ 현지법인 근무자만 해당 ▶ 법인세 납부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해, 국외 세금납부증명서 대체가능(개인소득세 납부 영수증) *심사 시 제출 불가 사유 등의 추가적인 서류 요청할 수 있음 ▶ 지원자격기간 마지막 날 기준 역산하여 3년 치 세금납입증명
16	사업자등록증(해당국)	▶ 현지 자영업자만 해당 ▶ 사업자 등록일이 국외 근무 시작일 이전이어야 함
17	보호자 세금 납입 증명서	▶ 현지 자영업자만 해당 ▶ 지원자격기간 마지막 날 기준 역산하여 3년 치 세금납입증명
18	종교단체 법인설립허가증 및 해당 종교단체장이 발급한 선교사 파견사실 확인서	▶ 국외파견 선교사만 해당 ▶ 파송증명서는 지원 자격에 명시된 종교단체장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노회파송증명서까지 인정함. 단, 노회 파송 선교사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노회 소속을 알 수 있는 재단의 총회명부, 교단을 증빙할 수 있는 소속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함께 제출

(4)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

순번	목 록	상세내용
1	지원자적심사신청서	본교소정양식 ※ 국외재학 기간 중 특례기간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특례기간(3년) 반드시 작성
2	국외학교 조사표	본교소정양식
3	초·중·고 수학기간 종합기록표	본교소정양식

4	학력조회동의서 Letter of Consent 학력조회요청서 Letter of Request	▶ 재학한 모든 국외학교에 대해 각 1부씩 작성 ▶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는 작성하지 않음 ▶ 학력조회요청서(Letter of Request)는 [지원자 작성란]만 작성
5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초·중·고)	▶ 모든 제출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하여 원본 제출 ▶ 국외에서 발급받은 모든 서류는 해당국가에 소재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제출 ▶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모든 서류는 공증 받은 국문 또는 영문 번역서 첨부. 중국어의 경우 중국정부 공증처에서 작성한 공증서 함께 제출 ▶ 고교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자는 합격 후 졸업증명서 추가 제출 ▶ 일부기간 재학으로 졸업증명서 발급 불가시 재학증명서 제출 ▶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에서 발급한 서류에 대해서는 학교장 직인 외에 별도 공증 필요 없음 ▶ 초등학교의 경우 성적증명서는 성적이 기록된 학교생활기록부로 대체 가능 ▶ 성적증명서는 학년별 School Report 대신 Official Transcript를 제출해야함 ▶ 학교 사정 상 재학증명서가 발행되지 않는 경우, 해당학교 담당자의 서명, 날인을 받은 공식 letter도 제출 가능 함. 단, 재학기간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함
6	성적증명서 (초·중·고)	
7	국외학교 학사일정표	▶ 초중고 (국외학교만 해당) ▶ 학사일정 (학기시작 및 종료일 등이 표기된)을 홈페이지에서 출력하거나 캡처하는 경우, 홈페이지 주소 표기 ▶ 영어가 아닌 외국어의 경우 번역공증
8	가족관계증명서 (부/모/학생)	▶ 지원자 기준 (2024년 6월 발급분부터 인정)
9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학생만)	▶ 2024년 6월 발급분부터 인정 ▶ 국내 입국 사실이 없을 경우 입국하지 않았다는 출입국사무소의 확인서 제출
10	출입국사실증명발급 신청위임장 (학생만)	
11	여권사본 (학생만)	▶ 여권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의 사진 페이지
12	외국국적증명서 (시민권 또는 여권사본)	▶ 전 과정 국외이수 외국인만 해당 (학생만)
13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복사본)	▶ 전 과정 국외이수 외국인만 해당 (학생만) ▶ 한국 거주 외국인에 한함
14	한국어능력증명서	▶ 전 과정 국외이수 외국인만 해당 ▶ TOPIK 3급 이상 자격증
15	재정보증인의 재정보증서 (본교소정양식)	▶ 전 과정 국외이수 외국인만 해당 ▶ 거주비자(F2) 소유 외국인은 재정보증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재정보증인이 지원자 본인으로 국내 거주자인 경우 제출 면제
16	혼인관계증명서	▶ 귀화를 허가받은 결혼이주민의 경우만 제출

(5) 북한이탈주민

순번	목 록	상세내용
1	지원자격심사신청서	본교소정양식
2	국외학교 조사표	본교소정양식 (국내학교 일 경우 작성 필요 없음)
3	고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국내고등학교 출신자에 한함
4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5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학력확인서	



- (1) 원서접수는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본교 입학홈페이지에(<http://enter.hansung.ac.kr>)에 직접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하기 바랍니다.
- (2) 접수 완료 후에는 입력 사항을 절대 변경할 수 없으니 입력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3) 입학원서의 기재사항 중 모집단위의 변경은 불가능하므로 인터넷 접수 시(전형료 결제 전) 반드시 입력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 제출서류는 지정된 기간 본교 입학관리팀으로 우편 제출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자는 전형 대상에서 제외(불합격 처리)합니다.
- (5)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을 지참하여 한성대학교에서 원본대조 확인을 필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원본 제출을 요하는 서류는 추후 최종 등록시 추가로 해당서류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서류제출 시 서류누락, 허위, 오류 등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 (7) 국외에서 발급받은 모든 서류는 반드시 해당국가에 소재한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 또는 해당국가 정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교육부 인정 재외한국학교는 영사확인 불필요
- (8)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 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하여 공증한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중국어의 경우 중국정부 공증처에서 작성한 한글(또는 영문) 공증서를 함께 제출.
- (9) 제출 서류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해당국 법원의 <동일인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10) 학력조회동의서(Letter of Consent)와 학력조회의뢰서(Letter of Request)는 반드시 국외 재학 모든 학교에 대해 각 1부씩 제출하며, 학력조회의뢰서(Letter of Request)의 경우 [지원자 작성란]만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외국학교 학적담당자란]은 학교에서 각 외국학교로 별도 요청하여 자격심사 시 확인예정.
- (11) 서류심사결과 지원 자격이 미달될 경우 면접고사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재학기간, 거주기간, 체류기간, 보호자 근무기간 등을 포함한 지원 자격을 미리 확인하시고 원서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12) 면접고사는 서류심사 합격자(면접대상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고사 장소 및 시간을 고사 전(3~4일) 본교 입학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 (13) 면접고사대상자는 면접고사 당일 본인의 수험표(원서접수 사이트 직접출력)와 신분증(여권, 외국인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원서접수 사이트에 접속하여 재 출력이 가능하며, 신분증(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미소지자는 면접고사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14) 합격자 발표는 본교 입학홈페이지에 게시하며, 별도의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15) 최초합격자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에 '온라인 등록'을 해야 등록으로 간주됩니다. 미등록시 등록 포기 처리됩니다.
- (16) 입학전형 성적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불합격자라도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17)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충원합격자 포함)는 수시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이후에 실시하는 모든 대학(전문대학 및 산업대학 포함)의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모든 대학의 입학허가가 취소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18)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1개 대학만 등록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대학에 등록한 자는 이중등록금지 위반자로서 입학이 취소됩니다.
- (19) 수시 충원합격 발표기간은 2024.12.19.(목) ~ 2024.12.26.(목) 18:00 예정입니다. 원서접수 시 충원합격 통보가 가능한 연락처를 기입하여야 하며, 연락처 입력 오류 및 누락으로 연락이 불가능 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개별 통보의 경우 연락이 안 되는 자는 불합격 처리한 후 다음 차점자에게 통보합니다.
- (20) 수시 및 정시모집 합격자가 충원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하며, 등록금 환불 신청은 본교 입학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21) [합격 후 등록 절차 확인]
 - ① 합격자 발표 후 등록에 따른 합격자 안내문을 본교 입학홈페이지에 게시하며, 합격자는 반드시 확인하여 지정한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② 합격자 안내문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이며, 지정한 기간 내에 온라인 등록을 하지 않거나 최종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 포기 처리되니 주의를 요망합니다.
- ③ 등록금납부영수증은 등록금 납부 즉시 본교 입학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22)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① 지원 당시 고등학교 졸업 예정이었으나, 합격 후에 졸업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② 입학시기가 같은 2개 이상의 국내 대학교에 동시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
- ③ 본교 입학일 이전에 국내외 타 대학의 학적을 정리하지 않은 경우 (이중 학적을 보유한 경우)
- ④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이 경우 별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음)

(23) 합격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등록 포기 처리됩니다.

(24) 최종합격자는 추후 공지되는 제출기간 내 원본서류 및 보안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시 합격 취소됩니다.

(25) 입학 허가자에 대하여 국내·외 전적학교의 학력조사와 거주사실 확인 결과 또는 제출서류 기재사항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학한 후이라도 합격 또는 입학허가가 취소됩니다.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반환기준에 준하여 반환하며, 본교 또는 타 대학에서 입학이 취소된 자의 경우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본교에 입학할 수 없습니다.

(26) 입학한 학생은 학칙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학 후 1년간 휴학할 수 없습니다.

(27) 입학전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본교 입학홈페이지를 통하여 학생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28)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입학전형 절차와 규정에 따릅니다.



('23. 6. 1. 기준)

국 가	학 교 명	주 소
일본	동경한국학교	(162-0056) 東京都 新宿區 若松町 2-1 東京韓國學校
	교토국제중학·고등학교	(605-0978) 京都市東山区今熊野本多山町1番地
	오사카금강학교	(559-0034) 日本國 大阪府 大阪市 住之江區 南港北 2-6-10
	건국한국학교	(558-0032) 大阪府 大阪市 住吉區 遠里小野 2-3-13
중국	북경한국국제학교	(100102) 中國北京市朝陽區望京北路37号
	천진한국국제학교	(300-381) 中國天津市西青區李七庄鎮林雅道与瑞河路交口
	상해한국학교	(201-107) 中國 上海市 閔行區 華漕鎮 聯友路 355號
	무석한국학교	(214-028) 중국 강소성 무석시 신오구 향타이로 102번지
	소주한국학교	(215200) 中國 江苏省 苏州市 吴江区 太湖新城 秋枫街 299号
	홍콩한국국제학교	55 Lei King Rd, Sai Wan Ho, Hongkong
	연대한국학교	(264-003) 中國山东省烟台市萊山区鳳凰北路1001号
	칭다오청운한국학교	(266108) 중국 산둥성 칭도시 성양구 천하로 1호
	웨이하이한국학교	(264-200) 중국 산둥성 웨이하시 임향구 강사동로 42-2
	대련한국국제학교	(116600) 중국 요녕성 대련시 개발구 진봉공업구 73호
	선양한국국제학교	(10168) 中國 辽宁省 沈阳市 渾南區 南屏東路 10甲号
	연변한국학교	(133000) 中國 吉林省 延吉市 朝陽街 2728A 延邊韓國國際學校
	광저우한국학교	(511447) 中國 广州市 番禺區 石樓鎮 興亞三路 東側 广州韩国学校
대만	타이베이한국학교	(10876) 台北市 萬華區 青年路 68巷9號 台北韓國學校
	카오슝한국국제학교	(804) 高雄市鼓山區鼓山二路37巷81弄43-2號
베트남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21 Tan Phu Street, Tan Phu Ward, District 7, HCM, Vietnam
	하노이한국국제학교	Le Duc Tho Keo Dai, Mai Dinh, Cau Giay, Ha Noi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한국학교	P.O.Box 88824 Riyadh 11672 Korean School
	젯다한국학교	P.O.BOX 4322, Jeddah 21419, Saudi Arabia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13820) JL. BINA MARGA NO.24 KEL CEGER JAKARTA TIMUR INDONESIA
싱가포르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289759) 71 Bukit Tinggi Road, Singapore
태국	방콕한국국제학교	(10220) 14/107, Ram Intra Soi 13 Yaek 4, Bang Khen, Bangkok, Thailand
필리핀	필리핀한국국제학교	(1634) 6-A, Upper McKinley Road, McKinley Hill Center, Fort Bonifacio, Taguig City, Philippines
파라과이	파라과이한국학교	Colegio Coreano Paraguay, Padre Casanello esquina Batilana Asuncion Paraguay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한국학교	(1406) Instituto Coreano Argentino, Asamblea 1840 C.A.B.A
러시아	모스크바한국학교	(121-596) 8 bld. 3 Tolbukhina str. Moscow 121596 Russia, Moscow Korean school
이란	테헤란한국학교	(1514635614) No 16., 4th Dead End., Bokharest St., Tehran
이집트	카이로한국학교	48Rd 1st Zone 6th Area New Cairo, Egypt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한국국제학교	Jalan CV 2, Selangor Cyber Valley 63300 Cyberjaya, Selangor
캄보디아	프놈펜한국학교	#615, St 1015, Phnom Penh Thmey, Sen Sok, Phnom Penh, Cambodia

총계: 16개국 34개교

*상기 명단은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 최종 명단이며, 해당 기관 자료 수정 시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양식

[참고용]

※ 본 서식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제출서류양식은 본교 입학홈페이지
'재외국민전형-자료실-제출서식파일' 또는 원서접수 시 원서접수사이트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5학년도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격심사신청서

전형 구분 (해당□에 √표시)	일반 재외국민 (중·고교과정 국외이수자)	☐ 외국영주교포의 자녀 ☐ 국외근무자 (공무원) ☐ 국외근무자 (상사주재원) ☐ 국외근무자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 국외근무자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 기타 재외국민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	☐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 재외국민 ☐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 이주민 ☐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지원자	성명	(한글) (영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지원학과(부)	학부(과) (주간 / 야간)				
지원자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		연락가능 한 보호자 연락처	
				관계:	
	E-mail				
초·중·고	기간		학교명		학년/학기
	. . ~ . .		년 개월		
	. . ~ . .		년 개월		
	. . ~ . .		년 개월		
	. . ~ . .		년 개월		
	. . ~ . .		년 개월		
	. . ~ . .		년 개월		
	. . ~ . .		년 개월		
	총 재학기간 (국내·외 합산)		년 개월	총 국외 중·고교 재학기간	년 개월
대학 과정	. . ~ . .		년 개월		
	. . ~ . .		년 개월	대학교 총 이수학년	
특례기간 (3년)		. . ~ . . ※ 특례에 해당하는 기간 반드시 작성 할 것			
구 분	지 원 자		부 또는 모(보호자)		부 또는 모(배우자)
성 명					
국 적					
* 아래 내용은 「일반 재외국민의 자녀」만 작성함					
국외근무국					
국외근무처					
국외근무기간					
국외거주기간	. . ~ . . 년 개월 일	. . ~ . . 년 개월 일	. . ~ . . 년 개월 일		
재외국민 등록일	. . ~ . .	. . ~ . .	. . ~ . .		
재외국민 등록기간	. . ~ . .	. . ~ . .	. . ~ . .		
* 아래 내용은 「영주교포의 자녀」만 작성함					
거주지	국가/도시				
거주기간					
영주권번호 및 취득일		. . ~ . .	. . ~ . .	. . ~ . .	
본인은 귀 대학교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한성대학교 총장 귀하 지원자 성명 : (인)					

외국학교 조사표

학교명	학년과정	학기 시작 및 종료 월	학교 전화번호 / 팩스번호	학교주소	E-mail / 웹사이트
(작성 예) 한글: ○○○초등학교 현지어: 영어:	1-6학년 과정	1학기: 3-8월 2학기: 9-12월	TEL: FAX:	한글: 현지어: 영어:	
(작성 예) 한글: ○○○중학교 현지어: 영어:	7-9학년 과정	1학기: 3-8월 2학기: 9-12월	TEL: FAX:	한글: 현지어: 영어:	

- ※ 학교는 외국 소재학교만 기재하고, 해당 학교의 공식명칭 (한글/현지어/영문 전부)을 기입해야 합니다.
- ※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는 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반드시 함께 표기해야 합니다. 예) 한국 +82-2-760-4114
- ※ 상기 신청서 내용 작성의 허위 및 오류 등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초·중·고 수학기간 종합기록표

학교				재학기간						소재 국가 /도시	
학교명	학제	초·중·고	학기제	시작일			종료일				총 기간
	년제	초□ - 중□ - 고□	2 □ 3 □ 4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년제	초□ - 중□ - 고□	2 □ 3 □ 4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년제	초□ - 중□ - 고□	2 □ 3 □ 4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년제	초□ - 중□ - 고□	2 □ 3 □ 4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년제	초□ - 중□ - 고□	2 □ 3 □ 4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년제	초□ - 중□ - 고□	2 □ 3 □ 4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년제	초□ - 중□ - 고□	2 □ 3 □ 4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3																										
4																										
5																										
6																										
7																										
국내·외 총 재학기간				년 개월				국외학교 재학기간				년 개월				국내학교 재학기간				년 개월						

※ 재학증명서 상의 정확한 날짜를 기입

특이사항 기재란 (중복수학, 월반, 특정 학기 성적기록 누락, 휴학기간 등의 특이사항 등 반드시 기재)			
내 용	기 간	학년/학기	사 유

위 기재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_____ (인)

LETTER OF CONSENT (학력조회동의서)

Office of Admission, Hansung University
116 Samseongyoro-16gil Seongbuk-gu, Seoul, 02876, Korea
TEL: +82-2-760-5800
FAX: +82-2-760-4215
E-mail: ipsi@hansung.ac.kr

RELEASE OF INFORMATION FORM

To whom it may concern:

By making application for admission to Hansung University, I hereby authorize administrator or other persons to confer with others to obtain and verify my credentials and qualifications as a provider.

I release from any and all liabilities, all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who act in good faith and without malice to provide the above information.

I consent to the release by any person to other institutions of all information that may be relevant to an evaluation of my credentials and qualifications and hereby release any such person providing such information of any and all liability.

Date of Birth (YYYY/MM/DD):

Name and Signature:

Date (YYYY/MM/DD):

※ 특례 기간에 해당되는 국외 학교별로 개별 작성하여 제출해야함

LETTER OF REQUEST (학력조회의를뢰서) ※ [지원자 작성란] 부분만 작성

Office of Admission, Hansung University
116 Samseongyoro-16gil Seongbuk-gu, Seoul, 02876, Korea
EL: +82-2-760-5800
FAX: +82-2-760-4215
E-mail: ipsi@hansung.ac.kr

To whom it may concern:

I am writing to request your kind assistance with our university's admission process. We need your school's verification of the attendance records of the applicant from your school. The answers to the following questions will be served only for the purpose of confirming and held confidentially. Kindly tick the correct box on the list of student form below. It would be appreciated if you send an e-mail the enclosed sheet back to us.

Your prompt reply will be greatly appreciated. Thank you for your time and cooperation.

Sincerely yours,

Dean of Office of Admission

Applicant's section [지원자 작성란]

Student's name		Date of birth	
Name of school		School phone no.	
School address			
Period of enrollment			
Date of Graduation / transfer			

Verifier/registrar's section [국외학교(초·중·고대학) 학적담당자 작성란]

Kindly verify the above student information in the box below.

Verification	Tick / Remark	
Basic information (above)	Correct ☐	Incorrect ☐
Period of enrollment	Correct ☐	Incorrect ☐
Date of Graduation / transfer	Correct ☐	Incorrect ☐
Descriptions in Transcripts		
Certified by		
• Name & Position		
• Affiliation		
• TEL		
• FAX		
• Email		
• Date		
• Additional comments		

※특례 기간에 해당되는 국외 학교별로 개별 작성하여 제출해야함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증명종류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	--

위임하는 사람 (발급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용도	대학 입학	제출처	한성대학교 입학관리팀
----	-------	-----	-------------

위임받은 사람 (신청인: 한성대학교 입학관리팀)	성명	한성대학교 입학관리팀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 담당자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삼선동2가) 한성대학교 입학관리팀 (TEL: 02-760-5800)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발급신청(조회) 및 수령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202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유의사항>

-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인장의 도용 등으로 허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증명서의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 외국인만 해당

재정보증서

지원자(학생) 인적사항				
이름(Name)	한글(Korean)		생년월일 (Date of birth)	
	영문(English)			
성별(Gender)			국적(Nationality)	
주소(Mailing Address)			핸드폰 번호 (Mobile Phone No.)	
이메일(E-mail)				
재정보증인 자격: 보호자(부모), 자국민(한국국적), 또는 국내거주인(지원자, 외국인 포함)만 해당됨. 지원자와 재정보증인은 한성대학교 전 교육과정 기간 동안 교육비 납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가족에게도 납부에 대한 의무가 주어집니다. 재정보증인은 미화 10,000\$ 이상을 1개월 이상 계속 예치한 예금 잔고 증명서나 국내 송금 또는 환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Please attach a bank certification indicating that either you or your sponsor have at least USD 10,000 for at least a period of one month in your account or your sponsor's account)				
재정보증인 인적사항 (Sponsor's Information)				
이름(Name)	한글(Korean)		생년월일 (Date of birth)	
	영문(English)			
성별(Gender)			국적(Nationality)	
지원자와의 관계 (Relationship)			직업(Occupation)	
주소(Mailing Address)			핸드폰 번호 (Mobile Phone No.)	
위 본인은 지원자 _____의 한성대학교 전 교육과정 교육비에 대하여 책임질 것을 보증합니다. I guarantee that the amount of US\$ will be paid and covered for the above named applicant for the entire duration of this program. 년 월 일 재정보증인 (Sponsor) _____ (Sign)				

